

5.31 지방선거 경기도사회복지 대책위원회
제 2 차 실 무 위 원 회 의
2006. 5. 2.(화) 14:00

회 의 자 료

5.31 지방선거 경기도사회복지 대책위원회

일 정

- 일 자 : 2006. 5. 2. (화) 14:00
- 장 소 : 경기도사회복지공동모금회

1. 5.31 지방선거 경기도사회복지 대책 실무위원 소개
(경기도실직자노숙인시설연합회, 한국장애인장애인사회복지시설협회 경기지부 추가참가)
2. 5.31 지방선거 경기도사회복지 대책위원회 경과보고
3. 참여단체별(분야별) 의제발표
4. 공통의제 선정
5. 전체일정 및 기타논의

5.31 지방선거

경기도사회복지 대책위원회 경과보고

(1차 실무위원 회의록 참조)

5. 31. 지방선거 사회복지정책 공약화를 위한 제 1 차 실 무 위 원 회 회 의 록

□ 개최개요

- 일 시 : 2006년 4월 21일(금) 14:00
- 장 소 : 경기도사회복지협의회 회의실 (수원시 영통구 원천동 소재)
- 참석인원 : 9단체 11명 참석 (가나다순정리)

경기도노인복지시설연합회	실 장	정 용 수
경기도사회복지공동모금회	사무국장	박 상 용
경기도사회복지관협회	사무국장	김 선 구
경기도사회복지사협회	사무국장	전 상 원
경기도사회복지협의회	사무처장	김 종 태 외 2인
경기도아동복지연합회	실 장	한 경 희
안양시관악장애인복지관	관 장	최 영
경기도장애인재활협회	사무국장	이 영 재
경기복지시민연대	사무국장	허 윤 범

○ 진 행

시 간	내 용	장소	비고
14:00 - 14:10	○ 개회 및 실무위원 상견례	경기도사회복지협의회	
14:10 - 15:40	○ 사회복지정책토론회 추진일정·방향협의 및 분과구성 실무위원 회의		
15:40 -	○ 폐회		

- 사 회 : 김종태 경기도사회복지협의회 사무처장

회 의 록

제목	제1차 5.31 지방선거 경기도사회복지 대책 실무위원회의		
일시	2006. 4. 21.(금) 14:00 ~ 15:40	장소	경기도사회복지협의회 회의실
회의내용	<p>※자유토론시 핵심거론 내용요약</p> <p>1. 토론회 일정</p> <p>타 단체에서 선거와 관련된 토론회를 개최하는 사례가 많으나,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문의한 결과 선거법에 근거하여 5월 17일까지 후보자 등록기간인 관계로 5월 18일에서 30일 사이만 가능함을 확인하였다며, 토론회 일정을 조정해야한다고 하다. 아울러, 5월 2일에 제2차 실무자회의를 통하여 공통의제와 분야별의제를 수립하기로 하였으며, 후보자초청 토론회 이전에 사회복지 전체의 의견수렴을 통한 검증이 필요하다면서 내부공청회 개최를 제안하다.</p> <p>2. 예산부분</p> <p>당초 예산부분에 있어서 공동주관단체인 경기도사회복지협의회와 경기도사회복지사협회가 각100만원, 참여단체간 각30만원을 부담하기로 하였으나, 단체별 예산부담으로 인하여 공동모금회 기획사업으로 제출하기로 의결함에 따라 부담금 납부를 한시적으로 보류하기로 하다.</p> <p>3. 분과구성 및 분야별 의제수립</p> <p>아동(아동복지연합회), 청소년(경기도청소년상담센터), 노인(경기도노인복지시설연합회), 장애인(경기도장애인복지관협회, 경기도재장애인활협회, 경기도정신장애인협회, 경기도장애인시설협회), 자활(한국자활후견기관협회 경기지부)·노숙(경기도노숙인협회), 지역복지(경기도사회복지관협회, 경기도사회복지협의회, 경기도사회복지사협회, 경기복지시민연대), 기타(공공부조, 외국인노동자 外)의 7분과로 구성하기로 하였으며, 참여단체가 해당분야별로 제2차 실무위원회의 전일까지 의제를 제출하기로 하였으며, 정신장애 및 노숙인 분야의 참여를 유도하기로 하다.</p> <p>아울러, 지난 2002년 사례를 검토하며 금번 의제준비는 과거 단순 선심성, 구호성 공약이 아닌 제대로된 실질적이며 검증을 통한 정책제안과 감독을 통한 실현이 중요하다며 서울시사회복지사협회에서 준비하고 있는 토론회와 비교해 볼 때, 우리의 경우는 도내 직능·유관단체가 함께하기 때문에 더욱 좋은 의제를 발굴할 수 있을 것이라고 부연설명하다.</p> <p>4. 기타의견</p> <p>- 선거관리위원회에서 공식기간 내에 선거관련 토론회를 실시할 경우 비용 및 장비 등이 제공 및 대여가 되고 있다는 의견에 따라 검토하기로 하다.</p>		

참여단체별(분과별) 의제

목 차

1. 지역복지(경기도사회복지종합지원센터)
 - 경기도사회복지협의회
2. 지역복지(사회복지종사자처우개선 및 교육)
 - 경기도사회복지사협회
3. 지역복지(주민복지 전달체계 확대실시)
4. 지역복지(복지예산) - 경기복지시민연대
5. 노숙 - 경기도실직자노숙인시설연합회
6. 청소년 - 경기도청소년상담센터
7. 자활 - 한국자활후견기관협회 경기지부

1. 경기도사회복지협의회

경기도사회복지종합지원센터 제기능 및 운영 합리화

○ 현황 및 문제점

- 2002년도 제3기 6. 13. 지방선거시 도단위 사회복지관련 단체들의 의제를 취합, 공동과제 및 각 분야별 의제를 후보자들에게 전달하고 각 후보자별 답변서를 받은바 있으며, 특히 공동의제 내용 중 경기도사회복지회관 건립에 관련한 사항을 각 후보자별 서면답변을 통한 확고한 의지를 확인한 바 있음.(관련근거 : 2002 복지경기 21 사회복지정책과제집)
- 이에 경기도사회복지회관 건립 추진을 위한 타당성 조사('03. 8.)를 실시하였으며 이를 바탕으로 이후 경기도사회복지종합지원센터(이하 센터)로 명칭이 변경되어 그 기능 및 역할을 강화한 반면 도단위 사회복지단체의 장소적 통합(집중화)의 공간 지원을 배제하게 됨.
- 이와 관련 최근 경기도사회복지종합지원센터 설립방안에 대한 공개간담회('06. 3. 24.)를 실시하여 도의 설립 출연금을 자산으로 하는 별도의 법인설립의 타당성을 연구결과로 발표하였으며, 인력에 있어서는 48명의 상근인력(석사급 이상)과 모니터링, 평가(성과평가, 심사평가, 인증관리)와 연구조사(조사, 연구, 데이터베이스), 자원개발(인적자원개발, 물적자원개발, 네트워크 구축)의 역할과 기능을 제시하였다.
- 위와 같은 별도 재단형태의 설립 방안에 대한 공개간담회 참석자들의 의견으로 설문조사 표본 설정 및 객관성 확보가 미흡하였다는 지적과 현행 상위법(사회복지사업법 제33조, 동법시행령 제12조)에 명시된 기존 조직과 평가를 제외한 상당부분 역할과 기능이 중복됨을 제기하는 등 구체적인 민간영역에서의 전달체계 개선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 또한 센터 조직규모(상근 48명, 비상근 48명)의 역할 및 기능면에서 조사연구, 인적자원개발 측면에서 긍정적인 면도 있지만 보조급 지급 적정성 심사, 수탁자 선정 및 재위탁 심사, 정기 및 수사회계감사 등 주요업무에 대한 자칫 준 관리감독기관으로서의 오해소지가 있음을 우려함.
- 이는 2003년 12월 설립된 서울복지재단과 같은 유사한 형태로 각종 사회복지 관련단체의 반대와 거센 항의를 받은 바 있으며, 대표이사의 선임과정에서 풍부한 사회복지현장에서의 실천경험과 사회복지전문성 부족이 문제가 되고 있으며, 현재 부산복지개발원 역시 각종 사회복지단체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2006년 2월 설립허가로 인한 동개발원 이사장 선정과 원장을 선임 중에 있음..
- 현재 지역사회복지협의체와 사회복지협의회 등 유사한 기구들의 등장으로 지역주민의 혼란을 가중시키고 있으며 민간자율성을 저해하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우려도 있는 것이 사실이며, 막대한 예산을 투입하여 새로운 재단을 만들어 현행 복지체계와 전달체계상의 혼란과 중복투자의 낭비를 초래하게 됨으로 전달체계의 효율성과 일원화를 위하여 민간사회복지의 역할과 기능을 강화하는 것이 바람직함.
- 경기도에 있어서 센터의 건립은 민간사회복지분야의 네트워크 구축을 용이하게 할 수 있으며, 현재 사회복지종사자에게 필요한 각종 교육의 기회 제공을 통한 전문성 확보가 필요하나 현재 진행되고 있는 재단의 설립을 통한 설립은 기본적으로 반대하며 필요시 최소의 기구설립으로 민간의 참여를 보장하고 민·관의 협력체계를 바탕으로 경기도사회복지종합지원센터의 역할과 기능, 운영방법에 대한 재조사 및 협의를 요구함.

○ 타지역 사례 비교

구 분	경기도	서울특별시	부산광역시	충청북도
설립개요	공익재단(미정)	재단법인 서울복지재단	재단법인부산복지개발원	충북종합사회복지센터
구 성	- 이 사 장 : 1인 - 대표이사 : 1인 - 이 사 : 12인 이내 - 감 사 : 2인	- 이 사 장 : 1인 - 대표이사 : 1인 - 이 사 : 9인 이내 - 감 사 : 2인	- 이사장 : 1인 - 원 장 : 1인 - 이 사 : 11인 이내 - 감 사 : 2인	- 센터장 : 1인
직 원	48명	38명	15명	15명
총사업비	100억 - 부지매입비(19억2천만원) 및 건축비 (81억7천만원)	59억('06년 예산) - 자본금:5억, 인건비:20 억, 사업비:16억, 기타:18억	15억 - 출연금 : 5억, 임차료 : 7 억, 운영비 : 4억	78억 (건축비 70억) - 인건비: 4억, 사업비: 3억, 시설비 등 : 1억
추진상황	- '06. 3 설립방안 연구	- '03.12 설립	- '05.11 설립운영조례 확정 - '06.2 설립허가	- '03.3 건립계획 수립 - '04.11 신축공사 - '06.7 완공예정
주요 사업	○ 모니터링·평가(M&E) - 성과 평가 · 성과 기준마련 및 정기적인 평가 실시, 평가결과 관리 및 후속대책 마련, 성과주의예산제 정착 유도 - 심 사 평 가 · 보조금 지급액 적정성 심사 · 수탁자 선정 및 재위탁 심사 · 정기 수시 회계 감사 - 인 증 관 리 · 기관 및 프로그램 수준의 표준 마련, 인증 컨설팅 및 현장조사 · 인증기관 유지 보수 관리 ○ 연구 개발(R&D) - 연구조사, 데이터베이스 · 실태·육구만족도 조사 실시 지원, 실태·육구만족도 조사 · 이차자료 분석·정리·제공 · 사회복지프로그램, 매뉴얼(지침) 개발 연구, 사회복지프로그램 정책 분석 연구 · 각종 복지자원 및 복지수요자 D/B 관리, 웹 D/B 구축 · 각종 복지정보 안내/ 홈페이지 관리/ 사이버공동체 구현 - 인적, 물적자원개발 · 일선 복지 실무자 교육/ 전담공무원 교육, 중간관리자 CEO 교육, 직무 및 직급 교육 · 개인·이벤트기업을 통한 자원개발, 사회복지시설(단체)의 기획사업 지원 · 사회복지시설 시민·정부·기업 간 네트워크 구축 · 국제 네트워크 개발·구축, 대외홍보 사업(Public Relation)	○ 운영비 및 사업비 지원체 계 개선 - 보조금 지원기준 정비 - 신청사업 적정성 심사, 정산 및 결산검사 지원 ○ 관리체계 및 기반정비사업 - 각종 기준 및 지침 정비 - 시설간 기능정비 및 네 트워크 관리 ○ 조사연구업무 - 복지 프로그램 개발보급 및 교육, 현장지도 및 컨설팅 업무 - 조사활동 및 DB 구축, 조사연구 및 정책개발 - 복지시설 증장기 발전계 획 수립 ○ 실시 및 평가업무 - 위탁제 선정심사 지원 - 복지시설운영 및 서비스 평가(인증제 실시) - 회계절차 개선 및 회계 심사 ○ 재단 홍보 및 인재양성사 업 - 재단 홍보사업 추진 - 복지인재 양성 및 관리 체계 구축, 학술포럼행 사, 복지재단 운영실태 및 만족도 조사	○ 사회복지예산의 합리적 배분을 위한 복지시설 보조금 교부기준 마련 및 교부액의 심사평가 ○ 사회복지발전에 관한 중 장기 계획수립 ○ 사회복지정책 및 프로그 램 연구개발 ○ 사회복지 주요현안에 관 한 조사연구 ○ 지역 사회보건과 연계된 프로그램 연구개발 ○ 사회복지 관련 제도법 규지침 등의 개선 및 정비 방안 연구 ○ 사회복지 관련 사업타당 성 및 결과 심사평가 ○ 사회복지시설 운영 및 서비스에 대한 평가지 표 개발 및 평가 ○ 사회복지시설 수탁기관 에 대한 심의 선정기준 개발 및 평가 ○ 제1호 내지 제9호의 규 정에 의한 사업과 관련 하여 국가, 지방자치단 체 또는 민간단체 등으 로부터 위탁받은 사업 ○ 기타 법인의 목적달성에 필요한 사업	○ 사회복지단체 상호간 연계·교류 및 민간과 의 협력 지원 ○ 사회복지서비스 및 자 원에 관한 통합적 정 보제공 ○ 사회복지에 관한 각종 연구·조사 및 프로그 램의 개발 ○ 사회복지단체 시설종 사자와 사회복지교육을 희망하는자에 대한 교 육 ○ 사회복지와 관련한 주민 육구와 문제에 대한 상 담 및 지원사업 ○ 사회복지시설을 설치· 운영하고자 하는자에 대한 상담 자문 ○ 충청북도 또는 사회복지 지시설 등으로부터 위 탁받는 사업 ○ 사회복지관련 시설 또 는 자활기관 등에서 생 산되어지는 생산품의 전시·판매 ○ 기타 센터의 설치 목 적 달성에 필요한 사업 등

○ 대안제시

- 경기도사회복지종합지원센터의 합리적인 운영을 위한 민간의 참여를 보장하고 별도의 재단설립은 원칙적으로 반대함.
 - 현재 2차에 걸쳐 센터건립 및 운영에 관한 연구용역을 실시하였으며, 별도의 재단건립의 대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음.
- 별도 재단의 설립은 현행 복지체계와 전달체계상의 혼란과 중복투자의 낭비를 초래하게 됨으로 전달체계의 효율성과 일원화를 위하여 민간사회복지의 역할과 기능을 강화하는 것이 필요함.

2. 경기도사회복지사협회

순위	제목	필요성	현황 및 문제점	개선방안
1 순 위	사회복지사의 처우개선 -급여수준의 현실화 및 근로여건 개선	1. 타 휴먼서비스를 제공하는 전문인력에 비해 열악함. 2.복지국가를 지향하고 있는 국가에서 시급히 개선해야 할 문제임. 3.급속한 사회변동으로 사회복지서비스 수요증가. 4.사회복지현장의 종사자들은 장시간 노동과 열악한 근무환경	1. 사회복지사의 임금은 기본급이 각각 다르게 산정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각종 수당도 근무하는 기관별로 다르게 규정되어 있어 사회복지사의 평균임금이 서로 다르고 매우 낮은 수준임. 2.사회복지사의 우 근로기준법에 규정되어 있는 법정수당에 대한 보상규정도 전혀없는 실정임. 3.사회복지종사자의 열악한근무환경으로 이직률 증가 및 서비스의 질적저하	1.경기도 사회복지종사사 처우 및 근로실태 개선방안 수립 2.사회복지사 임금을 동등학력으로 동일한 사회복지 공익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사회복지전담 공무원 수준으로 개선 3.장기적으로는 동일한 임금수준 보장 사회복지시설 종사자의 근로환경 개선을 위한 적정인력 배치
2 순 위	사회복지사의 보수교육	사회복지사들도 타 전문가처럼 보수교육 규정 등을 통해 사회복지사들의 전문성 향상 필요	교육의 참여기회 제한과 사회복지사들의 소진현상 발생, 사회복지서비스를 효과적·효율적으로 사회적 취약계층에게 전달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	사회복지사 보수교육의 법제화 및 보수교육 이수시간 제정
3 순 위	사회복지시설, 기관의 균형배치	경기도내 사회복지시설,기관의 불균형으로 지역사회의 문제 해결 및 서비스제공의 어려움.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자립도와 단체장의 사회복지인식 필요	대부분의 사회복지시설,기관이 수도권 집중화현상과 지방화시대에 따른 재정자립도와 자치단체장의 사회복지인식에 따라 불균형 초래	사회복지기관에 대한 수요와 공급계획,복지인력수요,재정수요 등을 포함한 사회복지발전계획을 토대로 하여 다양한 복지수요를 충족시킬 수 사회복지 시설,기관의 균형배치 필요.

1. 사회복지사의 처우개선

□ 아젠다 1 : 급여 수준의 현실화

○ 필요성

- 사회복지종사자들은 오랫동안 사회적 봉사자라는 미명 하에 타 휴먼서비스를 제공하는 전문인력에 비해 열악함을 면치 못하고 있음.

- 소외된 계층을 지원하고 있는 사회복지종사자 스스로가 과중한 업무와 근로기준법에 명시한 수당조차 받지 못하는 여건속에서 일하고 있는 현실은 복지국가를 지향하고 있는 국가에서 시급히 개선해야 할 문제임.

- 아울러 경기도가 선도적으로 사회복지종사자들의 신분 안정성을 유도하고 처우개선에 앞장서야 할 것임.

○ 현황 및 문제점

- 아래 <표 1> 에서 알 수 있듯이 사회복지사의 임금은 기본급이 각각 다르게 산정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각종 수당도 근무하는 기관별로 다르게 규정되어 있어 사회복지사의 평균임금이 서로 다르고 매우 낮은 수준임.

- <표 2> 에서처럼 수당 또한 사회복지사의 경우 가족수당, 자녀학비보조수당, 육아휴직수당 등은 물론 시간외수당, 휴일근무수당 등 근로기준법에 규정되어 있는 법정수당에 대한 보상규정도 전혀없는 실정임.

<표1> 교사, 공무원, 사회복지사의 보수 비교 (단위:원)

직종	교사	공무원 (9급사회복지직)	사회복지관	생활시설 사회복지사
기준	2006년도 공무원보수규정	2006년도 공무원보수규정	2006년 서울시보수규정	2006년 종사자 수당가이드라인
1호봉	891,400	792,900	740,000	771,000

※ 자료 : 국회의원 고경화, “사회복지시설 종사자의 처우 무엇이 문제인가?” 공청회 자료집, 2006.

<표2> 교사, 공무원, 사회복지사, 연봉(1호봉 기준) 비교 (단위:원)

직종	교사	공무원	사회복지관	생활시설 사회복지사
연봉 총액	23,437,280	20,724,700	(서울시) 18,358,000 (타지역) 16,000,000	15,918,000

※ 자료 : 국회의원 고경화, “사회복지시설 종사자의 처우 무엇이 문제인가?” 공청회 자료집, 2006.

〈표3〉 사회복지사, 교사, 공무원에 지급되는 수당 비교

직종	교 사		공무원 (9급 사회복지직)		사회복지관 사회복지사		사회복지생활시설 사회복지사	
	상여 수당	기말 정근 장기근속	상여 수당	기말 정근 장기근속	상여 수당	기말 정근	상여 수당	기말 정근
수당 종류	가족수당		가족수당					
	자녀학비보조수당 ¹⁾		자녀학비보조수당					
	육아휴직수당 ²⁾		육아휴직수당					
	연구업무수당				직무수당		생활복지사수당	
	시간외근무수당		시간외근무수당					
	야근근무수당		야근근무수당					
	휴일근무수당		휴일근무수당					
	정액급식비		정액급식비		급량비		급식비	
	직급보조비		직급보조비		자격수당			
	교통보조비		교통보조비		교통비		교통비	
	국내여비		국내여비		효도휴가비			
	가계지원비		가계지원비		가계안정지원 가계보조수당		가계지원비 가계보조수당	
	명절휴가비		명절휴가비				명절휴가비	
			대민봉사활동비		복지수당			
	총 계	14 종류		14 종류		9 종류		7종류

※ 자료 : 국회의원 고경화, “사회복지시설 종사자의 처우 무엇이 문제인가?” 공청회 자료집, 2006. 재구성

○ 대안 제시

- 경기도 사회복지종사자 처우 및 근로실태 개선방안 수립

- 사회복지사 임금 수준 개선

▪ 사회복지사 임금을 동등학력으로 동일한 사회복지 공익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사회복지전담 공무원 수준으로 개선(2009년까지)

- 사회복지종사자 복지수당 50%인상

▪ 사회복지시설 종사자의 복지수당을 50%인상하여 현재 유사 공익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공무원 등과의 임금격차를 줄이고, 장기적으로는 동일 수당을 신설하여 동일한 임금수준 보장

□ 아젠다 2 : 적절한 사회복지서비스 제공을 위한 적정인력배치
(근무여건 개선 및 적정 근로시간 준수)

1) 중고생자녀의 학비, 분기별

2) 40만원/ 월

○ 필요성

- 급속한 사회변동으로 인한 가족해체, 고령화, 경제적 침체 등은 사회복지서비스 수요증가로 이어지고 있음.
- 대상자의 증가 : 요보호 대상에서 전국민으로 확대. 즉, 복리업무의 폭증으로 연결.
- 그러나 사회복지현장의 종사자들은 장시간 노동과 열악한 근무환경에서 좀처럼 벗어나기 어려운 실정에 있음.
- 이러한 현실은 결국 사회복지 수요에 대한 신속한 대응, 양질의 사회복지서비스 제공에 장애요인이 되고 있음.

○ 현황 및 문제점

- 사회복지종사자들의 장시간 노동과 열악한 근무환경은 근로자의 건강을 위협하고, 사회복지현장을 떠나게 하는 요인으로 작용하여 결국 그 피해가 사회복지서비스의 질적 저하로 이어져 수혜대상자에게 전가되고 있는 실정임.

〈표4〉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1주일간 근무시간

근무시간		빈도(명)	백분율(%)
항목	44시간 이하	1,948명	34.3
	45-50시간	1,745명	30.7
	51-60시간	1,282명	22.6
	61-90시간	494명	8.7
	91-168시간	207명	3.6
	합 계	5,676명	100.0

※ 자료 : 한국사회복지사협회 실태조사 자료, 2001.

- 사회복지사의 47.8%가 이직을 고려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주당 근무시간은 평균 52.85시간으로 〈표 4〉에서 나타난 것처럼 65.6%가 법정 근무시간 44시간을 크게 초과한 과중한 근무에 시달리고 있음.
- 아래 〈표 5〉에 나타난 것처럼 65.2%가 주6일 근무 형태를 보이고 있으며, 격주 휴무와 상근까지 합하면 91.7%가 정부의 주 5일제 근무와는 상관없는 업무 형태를 보임.
- 사회복지시설의 경우 지역의 저소득층에게 지방정부를 대신하여 사회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이다. 따라서, 이용자들의 욕구가 있는 한 토·일요일의 경우에도 서비스를 제공

해야 하는 경우라면 이를 대신할 서비스 제공기관의 기본적 인력 편성은 당연함.

〈표5〉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1주일간 근무일수

형태	빈도(명)	백분율(%)
주 6일	3,841	65.2
격주 휴무	908	15.4
상 근	653	11.1
주 5일	274	4.7
숙식·격일	49	0.8
기 타	162	2.8
합 계	5,887명	100.0

※ 자료 : 한국사회복지사협회, 2001.

○ 대안 제시

- 사회복지시설 종사자의 근로환경 개선을 위한 적정인력 배치
 - 사회복지시설의 표준업무에 따른 적정인력의 배치
 - 주5일 근무제 도입에 따른 적정인력의 산출 및 확충
- 근로기준법 규정 준수에 필요한 보조금 지원 의무화
 - 초과근무수당, 연월차 휴가 등 근로기준법 준수가 가능하도록 보조금 지급기준에 명시하고 보상에 필요한 현실적 예산 지원

2, 사회복지사 재,보수 교육훈련 제도화

1. 필요성

사회가 점점 다양화 및 세분화되어 가면서 전문가를 필요로 하게 되었다. 지금까지 전문가로 대표되는 것은 의사, 약사, 변호사 등으로 사회가 얼마나 전문직을 선호하며, 전문가에게 의지하는 바가 크다는 것은 누구나 주지하고 있는 사실이다. 하지만 그들이 전문가로서 인정을 받기 위해서 보수교육 규정 등을 통한 많은 노력이 있었기에 가능하였다. 타 전문가 단체의 경우 보수교육에 중요성을 제시하여, 교육목적으로는 평생교육의 일환으로 회원자질 향상과 신지식의 이론과 실제에 대한 재교육으로 전문성을 강화시키며, 국민의 복지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이에 사회복지사들도 타 전문가처럼 보수교육 규정 등을 통해 사회복지사들의 전문성 향상을 높여야 한다.

2. 현황 및 문제점

현재, 사회복지사의 경우 재보수교육에 대한 제도화가 되어 있지 않아 개별적인 비용부담으로 교육에 참여하고 있고, 업무과중과 관리자의 이해부족으로 본인의 욕구에도 불구하고 사회복지에 대한 전문적인 교육의 참여기회가 제한되고 있음. 이로 인하여 사회복지사들의 소진현상이 발생되어 그나마 절대적으로 부족한 사회복지서비스를 효과적·효율적으로 사회적 취약계층에게 전달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 보건의료 관련 국가자격증 소지자의 교육 훈련 제도

구 분	의사,치과의사, 한의사,간호사, 조산사	약사,한약사	임상변리사,방사선사, 물리치료사,작업치료사, 치과기공사,치과위생사, 의무기록사,안경사	사회복지사
관련법	의료법	약사법	의료기사등에 관한 법률	사회복지사업법
교육훈련	*보수교육 매년10시간 이상	*연수교육 매년8시간 이상	*보수교육 매년8시간 이상	없음
협 회	*보수교육 업무 위탁수행	**보수교육 업무 위탁수행	*보수교육 업무 위탁수행	입법 발의 중
과태료	*보수교육을 받지 아니한 자	*연수교육을 받지 아니한 자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3. 개선방안

가) 사회복지사업법 13조 개정(안)

현행 법령	제13조(사회복지사의 채용)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사회복지사를 그 종사자로 채용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회복지시설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①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사회복지사를 그 종사자로 채용하여야 한다.
개정 (안)	제13조(사회복지사의 채용 등)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사회복지사를 그 종사자로 채용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회복지시설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①(현행과 같음) ②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의 운영자는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채용한 사회복지사의 직무능력의 유지 및 향상을 위하여 사회복지사로 하여금 보수교육을 받게 하여야 한다. ③ 제2항의 규정에 따른 보수교육의 실시기관·내용·대상자의 범위, 그 밖의 보수교육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④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따른 보수교육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

나) 사회복지사업법 58조 개정(안)

현행 법령	제58조(과태료) ①제18조제5항, 제24조, 제31조, 제34조의3, 제37조, 제38조제1항·제2항 또는 제45조의 규정에 위반한 자는 300만원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개정 (안)	제58조(과태료) ①제13조제2항, 제18제5항, ----- ----- -----.

다) 부 칙

개정 (안)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교육에 관한 경과조치)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의 운영자는 이 법 시행 후 1년 이내에 그 종사자인 사회복지사로 하여금 제13조의 개정규정에 따른 보수교육을 받게 하여야 한다.
-----------	--

* 사회복지사업법에 사회복지사 교육훈련 의무조항을 제정하여 급변하는 사회복지정책에 신속히 대응하고 효과적이고 전문적인 사회복지서비스제공을 위한 능력과 기술을 습득,유지할 수 있도록 함.

3. 기타

주민복지 전달체계 확대 실시

2006년도 5.31 지방선거와 관련하여 공공복지행정의 좀더 내실성 있는 추진과 사회복지전달체계 구축 및 확대 실시하는 방안으로서 경기사회복지 5대 의제로 제시하고자 하는 정책공약 제안서임

□ 필요성

- 사회경제적 환경변화에 따라 복지수요와 정책이 지속적으로 확대되어, 사회복지전달체계의 효율적 운영 필요
- 저출산·고령화대책 등 지방정부의 복지정책이 강화되고 사회복지예산도 지속적으로 확대되는 추세임
- 따라서, 사회복지를 포함한 주민복지지원서비스 행정체계를 수요자 중심으로 개편하여 주민의 삶의 질 향상과 각종 정책의 효율적인 수행을 제고할 필요가 있음

□ 현황

- 중앙부처 주민복지 서비스 현황

부처별	복지부	문광부	노동부	청소년위원회	교육부	여성부	건교부	보훈처
216	89	49	28	17	12	9	7	5
분야별	복지	문화	고용	보건	교육	관광	주거	체육
216	105	41	28	15	12	6	7	2
대상별	저소득층	일반주민	청소년	아동	장애인	노인	여성	기타
216	38	37	28	27	23	21	14	28

- 지방자치단체 서비스 현황(경기도 포함)

<시도별 자체서비스>

구분	계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합계	3,692	469	266	45	219	101	97	39	782	282	142	221	138	309	171	347	64
시도	415	13	50	10	57	32	34	7	49	35	0	24	0	0	35	69	0
시군구	3,277	456	216	35	162	69	63	32	733	247	142	197	138	309	136	278	64

<분야·대상별>

분야별	복지	문화	보건	교육	주거	체육	고용	관광	기타
3,692	2,260	596	265	180	177	118	54	42	-
대상별	일반주민	노인	저소득층	장애인	아동	청소년	여성	모부자	기타
3,692	1,252	477	429	357	312	289	216	69	291

○ 사회복지직 정원 및 1인당 담당 기초수급 세대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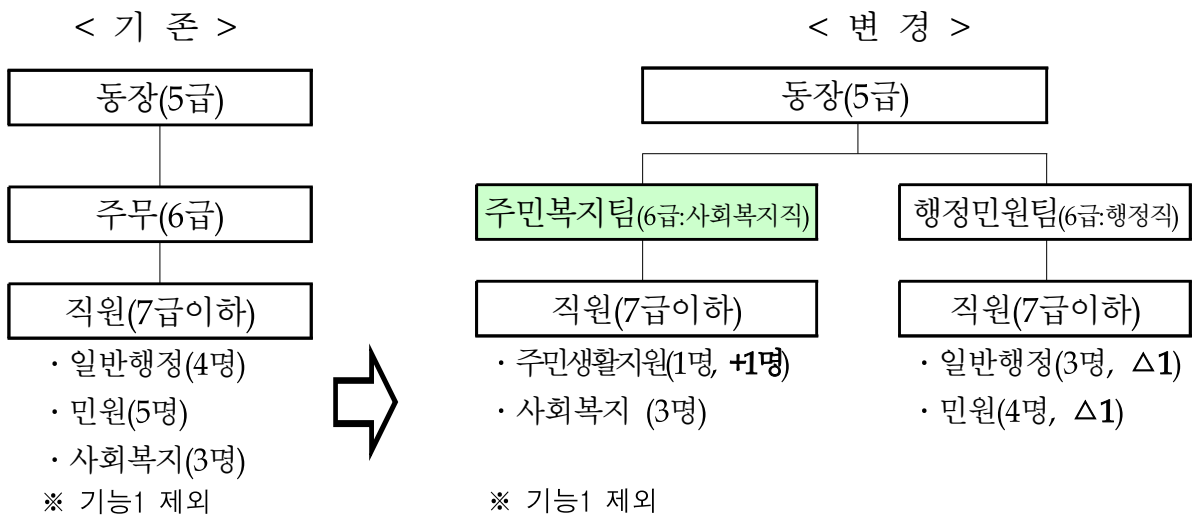
구 분	전국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정원	전체	8,904	1,081	667	436	419	250	247	123	1,347	427	345	565	589	771	821	695	121
	시도	192	33	27	19	20	14	11	7	13	9	3	5	6	9	6	9	1
	시군구	2,413	275	198	98	115	59	53	57	389	160	119	183	112	141	224	192	38
	읍면동	6,299	773	442	319	284	177	183	59	945	258	223	377	471	621	591	494	82
기초수급세대	821천	103천	69천	44천	34천	27천	21천	11천	112천	36천	30천	44천	63천	73천	82천	61천	11천	
담당세대1인 (읍면동)	130	133	156	138	120	153	115	186	119	140	134	117	134	118	139	123	134	

□ 문제점

- 사회복지기능의 대부분이 읍면동사무소에 집중되어 읍면동사무소의 사회복지직은 업무 과부하(사회복지직 71%가 읍면동사무소에 근무)
- 사회복지직이 민원처리 및 유관기관 자료제출 등 내부업무에 많은 시간을 할애, 본연의 임무임 심층상담·현장방문·사례관리 등 찾아가는 복지서비스에 소홀 (복지업무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어 찾아가는 복지서비스에 한계)
- 따라서, 시군구 본청과 읍면동사무소간 사회복지기능의 합리적인 배분을 통해 업무의 효율화 필요
- 시군구 본청은 복지기획, 통합조사, 서비스연계, 급여지급, 긴급지원 등 업무의 집중화로 효율성·전문성을 제고
- 읍면동사무소는 현장방문, 신청접수 및 상담, 급여대상자 사후관리 등 접근성·현장성 업무를 수행

□ 개선방안

- 기존 동사무소를 팀제 중심으로 개편(주민복지팀, 행정민원팀 등 2팀)
 - 가급적 주민복지팀장은 사회복지직으로 업무 추진의 효율화 기여
- 조직개편시 사회복지담당 인력 확대 재배치 추진(현장성·접근성 강화)
- 기존 동사무소 명칭을 주민자치센터에서 주민복지센터로 명칭 개정
- 향후 2년내 지방비(도비)를 확보하여 사회복지직 점증적 확충
- 동사무소의 기구·인력조정안(예시)



4. 경기복지시민연대

경기도민이 보편적으로 체감할 수 있는 복지예산 20% 확보

1) 필요성

노인인구의 증가 및 출산율의 저하, 여성의 사회활동 참여 증가 등 사회적 환경의 변화가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 한편, 사회적 양극화, 신빈곤층의 발생 및 증가 등은 여전히 빈곤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있음을 말해준다. 또한, 주민의 복지욕구는 과거에 비해 질적으로나 양적으로 급속하게 증가하고 있다.

이러한 사회복지의 일차적 책임은 국가 및 지방정부에 있다. 그리고 복지제도가 충실히 운영되기 위해서는 예산의 확보가 무엇보다 중요하고, 복지예산은 바로 경기도 복지정책의 충실성을 확인할 수 있는 지표이기도 하다. 특히 지방자치단체의 복지예산은 주민의 삶의 증진과 직접적으로 관련이 있다는데서 더욱 중요하다.

2) 현황 및 문제점

경기도의 재정자립도는 전국 9개 광역자치단체 가운데 가장 높으며, 1인당 지방세 부담액도 가장 높다. 반면 지방예산의 세출총액으로 지역주민이 혜택을 보는 절대액인 1인당 세출예산액은 가장 낮으며, 사회보장비 비율과 1인당 사회보장지출비용 역시 전국 9개 도(道)단위 광역자치단체 가운데 가장 낮다.

또한 지방자치단체의 특성에 맞는 복지정책을 펼치는가를 확인하기 위해서 보조사업예산과 자체사업예산의 비율을 살펴보았으나, 자체사업예산의 비율이 10% 내외에 그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경기도 2005년 1회 추경예산의 경우 전체 사업예산 중 보조사업예산은 51.1%, 자체사업예산은 48.9%의 비율을 보이고 있어 사회복지예산의 경우 자체사업예산의 비율이 상당히 낮은 것을 알 수 있다. 한편, 2005년 신설된 분권교부세의 도입에 따라 지방비(도비) 부담액도 삭감되어, 지방자치단체의 복지예산 수준은 더욱 열악해졌다.

< 광역자치단체(道) 재정예산지표 비교 >

		평균	강원	경기	경남	경북	전남	전북	제주	충남	충북
재정자립도 (%)	2003년	39.4	21.7	75.8	33.4	22.0	14.0	18.0	33.1	24.3	25.6
	2004년	41.3	24.2	78.0	34.1	22.3	14.2	18.9	29.1	26.2	26.2
	2005년	36.6	22.4	70.3	29.8	22.4	11.9	17.9	30.3	29.0	25.2
1인당 지방세부담액 (천원)	2003년	320	208	491	273	178	155	164	448	207	192
	2004년	354	235	548	276	200	160	174	440	242	207
	2005년	339	270	485	278	211	160	193	434	274	225
1인당 세출예산액 (천원)	2003년	783	912	655	798	724	1,040	835	1,369	900	793
	2004년	844	1,004	723	808	809	1,133	875	1,391	984	838
	2005년	897	1,253	677	941	877	1,291	1,033	1,511	1,052	883

자료: 행정자치부 재정고(<http://lofin.mogaha.go.kr>)

< 광역자치단체(道) 사회보장비 비교 >

		평균	강원	경기	경남	경북	전남	전북	제주	충남	충북
사회보장비율 (%)	2003년	14.1	15.0	9.8	13.3	16.6	17.8	20.0	12.7	16.6	16.4
	2004년	14.3	14.6	10.0	12.7	17.0	17.6	21.7	12.7	16.8	17.5
	2005년	14.6	11.3	11.8	14.6	15.4	17.3	20.8	14.1	16.0	16.5
1인당 사회보장지출비 (천원)	2003년	137	137	64	106	120	186	167	174	149	130
	2004년	151	147	72	103	138	200	190	195	165	147
	2005년	163	141	80	137	135	224	215	224	168	146

주: 당초예산 기준

자료: 9개 광역자치단체(道) 홈페이지, 통계청 홈페이지

< 사회복지 사업예산 중 보조사업과 자체사업의 비교 >

구 분	1999년		2000년		2001년		2002년		2003년		2004년	
	보조	자체	보조	자체	보조	자체	보조	자체	보조	자체	보조	자체
사회보장예산(%)	78.6	21.4	90.3	9.7	89.0	11.0	89.2	10.8	87.2	12.8	85.5	14.5

주: 사회복지예산은 사회복지비 외에 보건의료 및 정신장애 예산이 편성되어 있는 보건관리예산도 포함된 것임

자료: 경기도 세입세출예산서(최종)

< 지방이양사업 2004년 대비 2005년 예산확보 현황 >

단위: 천원

년 도	2004년			2005년			삭감액		
	계	국비	도비	계	분권교부세	도비	계	국비	도비
예 산	69,120,371	50,006,457	19,113,914	60,602,103	46,205,033	14,397,070	8,518,268	3,801,424	4,713,844

주: 각각의 예산액은 지방이양사업 중 설명자료에 나와 있는 57개 사업의 예산을 합한 것임.

자료: 경기도 보건복지국, 가족여성정책국 2005년 당초예산안 설명자료 재편성

3)개선방안

-경기도 복지예산 비율을 일반회계 대비 최소 20% 확보 및 예산계획 수립

5. 경기도실직자노숙인시설협회

순 위	제목	필요성	현황 및 문제점	개선방안
1 순 위	쉼터 기능의 강화	재활, 자활, 여성 등으로 쉼터의 특 성화 작업을 통하 여 노숙인을 위한 맞춤식 교육기능 의 강화	쉼터 속에 노숙인들이 섞여 있으므로 전문인 력 부재, 예산 부재로 인하여 교육이 불가능 함	교육 프로그램의 증설, 교육담당직 원의 전문화, 교육 예산 확보, 초기상 담 기능 강화
2 순 위	시설의 양성화 및 시설 종사자 급여 의 현실화	입소자의 쾌적한 주거 환경을 위한 시설의 강화 및 현 종사자의 열악 한 근무 환경 및 처우 개선의 상향 평등화	4년제 대졸자 평균 초 봉 170만원(수당 포함, 실제 수령액 250이상)현 종사자들의 수준은 같 은 대졸자 초봉의 70% 수준임.	시설 종사자 급여 의 현실화, 시설의 강화 예산 편성
3 순 위	노숙인 완전 취업 을 위한 시스템 구 축	노숙인의 자활을 위해서 취업, 교 육 기능이 필요함	우리나라 어느 곳에서 도 노숙인 취업을 위한 시스템이 없다	자활 대학의 활성화, 드롭인 센터 설치.

6. 경기도청소년상담센터

1. 경기도 청소년정책포럼 정기 개최

1) 제시사유

최근 주5일제 수업의 확산과 더불어 청소년을 둘러싸고 있는 제반 사회, 문화적 환경의 급격한 변화는 새로운 청소년정책의 비전과 목표를 수립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경기도의 청소년인구는 서울을 능가하고 있는 추세이므로 우리 나라의 새로운 청소년정책 수립을 선도해 나가야 할 사명을 지니고 있다. 따라서 청소년정책 포럼을 개최하여 청소년 관련 각계 전문가들과 현장의 목소리를 듣는 정책토론의 장을 마련하여 경기도 청소년 정책을 수립하는 것이 요구된다.

2) 공약과제

- 경기도 청소년정책포럼 구성 및 정책 토론회 실시

2. 청소년육성전담공무원 배치 조속히 실시

1) 제시사유

청소년정책은 10년-20년 후를 내다보고 장기적인 안목에서 수립되고 실천되어야 한다. 그런데 정책 실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의 경우 보통 1-2년마다 교체됨으로 인하여 연계성이 부족한 가운데 정책이라기 보다는 일회성 단위사업에 그치는 경우가 많다. 또한 청소년관계 기관에서는 담당 공무원에게 업무를 설명하는데 많은 시간을 보내게 되고, 기껏 업무 특성을 설명하면 다른 자리로 이동하여 업무설명에만 그치는 경우가 허다하다.

특히 청소년관계부서가 한직으로 소문나있기에 다른 요직으로 이동할 생각들을 가지고 있는 상태에서 업무에 열정을 발휘하기 어렵다.

2) 공약과제

청소년기본법에 명시되어 있는 청소년육성전담공무원 배치를 도정책을 담당해야 하는 경기도 청소년과에 먼저 배치할 것

3. 지식기반사회에 적합한 청소년직업체험센터 건립

1) 제시사유

미래 청소년 정책은 과거와 같이 청소년들을 기존의 가치관과 제도적 틀 안에 안전하게 보호하거나 기성세대가 생각하는 바람직한 방향으로 육성하는 데 그쳐서는 안 된다. 청소년들이 자신의 잠재적 가능성을 계발하고 역량을 강화하며, 관심과 취향에 따라 체험을 통해 스스로 도전해 나갈 수 있도록 지원하는 방향이어야 한다.

따라서 다양한 활동기회와 직업역량 강화를 위한 직업체험센터 건립이 요구된다.

서울의 경우에는 ‘서울시립 청소년직업체험센터(하자센터haja center)가 설립 운영되고 있다. 하자센터는 1999년 12월 IMF 경제위기 상황에서 인문학적 성찰 능력, 디지털 리터러시, 경영 마인드를 갖춘 문화작업자를 길러내어 청년 실업문제를 해결하는 하나의 모델을 만들기 위해 설립되었다.

하자센터는 다양한 문화강좌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으며 5개 작업장(대중음악, 영상, 생활 디자인, 웹, 시민문화 작업장)을 두어 그곳에서 청소년들이 장인들과 함께 지속적인 문화작업을 하면서 자기를 발견하고, 성장하며 나아가 직업에 대한 탐색을 하도록 돕고 있다. 하자센터에서는 청소년들이 자기주도적 학습 능력을 기르는 것을 강조하고 있으며 이를 지원하기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과 풍부한 인적 네트워크를 가지고 있다.

2001년 9월에는 장기적이고 체계적으로 자기 삶을 설계하려는 탈학교 청소년들을 위하여 하자작업장학교를 만들었고, 하자작업장학교는 학생 수가 최대 100명을 넘지 않는 규모의 작은 학교이면서 맞춤학습, 네트워크에 의한 학습, 작업을 통한 학습 등을 도입한 새로운 도시형 대안학교이다. 학생들은 작업장에서 자기 전공 작업을 하면서 학교의 안팎에서 인문학과 외국어 등을 학습하고, 자치 활동 프로젝트, 인턴십 프로젝트 등을 한다.

2) 공약과제

- 경기도청소년직업체험센터 건립

4. 위기청소년(자살, 학교폭력, 인터넷중독, 학업중단, 가출, 은둔형 청소년)들을 위한 대안으로 청소년동반자 프로그램 활성화

1) 제시사유

청소년동반자(Youth companion)란 위기청소년들의 가정이나 학교 등으로 직접 찾아가 상담 등의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제공하여 문제 해결을 돕는 전문가를 말한다. 2005. 10월부터 국가청소년위원회는 가정해체 등으로 급증하고 있는 위기청소년들에게 문제 해결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청소년동반자 프로그램을 개발해 경기도 등 4개 지역에서 시범 실시하였다. 그 결과 78점의 만족도와 96%의 프로그램 권유율을 보인 것으로 나타났다.

경기도는 현재 수원, 안양, 안산, 의정부, 군포 등 5개 지역에서 실시되고 있는데, 내년부터는 이를 전지역에 확대시켜 운영할 필요가 있다.

2) 공약과제

청소년동반자프로그램 전지역 확대 실시

5. 혼혈청소년을 위한 정책 수립

1) 제시사유

전국적으로 국제결혼 이민자 자녀 학생수를 보면 경기도가 1,435명으로 전국의 약 30%를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여러 연구들을 살펴보면 ‘혼혈청소년’은 자아정체감 위기, 가족관계의 어려움, 직업과 결혼에 대한 부정적 인식, 한국사회에 제대로 적응하지 못하는 모습 등의 부정적인 특성들을 보여주고 있으며, 1986년 의정부의 기지촌에 설립되어 기지촌의 성매매, 인신매매된 피해여성들과 그 여성들이 낳은 아이들을 상담·지원하며 프로그램들을 운영한 두레방에서 2003년에 실시한 조사에 따르면 혼혈인들은 대부분 혼혈인의 지원정책이 필요하다고 대답하였다(82.2%). 그 중 제일 많은 혼혈인들이 생계보장문제가 가장 시급하다고 하였다(33.3%).

특히 혼혈청소년들이 안정적으로 성장하기 위해서는 기본적인 생계문제에 대한 지원이 있어야 하고 안정적으로 학교에 다니고 구직 시 차별을 겪지 않아야 한다.

혼혈인 자녀를 양육하는 어머니들이 제일 먼저 꼽는 어려움이 생계문제와 아이들 학비문제이다. 그리고 혼혈인에 대한 사회적인 차별과 편견을 없애는 노력도 함께 기울여야 할 것이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선 혼혈인들이 일상적인 차별의 경험이 빈곤을 통한 사회·경제적 지위의 박탈이라는 배제의 결과를 낳았다. 특히 구타와 폭언, 놀림과 따돌림 등 신체적, 정신적 폭력을 지속적으로 경험하고 있다. 이러한 폭력의 결과로 혼혈인들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자존감을 침해받으며 사회생활을 하는데 있어 장애를 겪고, 자신들이 속한 관계와 사회로부터 고립되었다. 혼혈인들을 피해자로 이해하고 받아들이는 것은 이들을 사회로부터 보호할 수 있는 초석을 마련하는 것이며 이러한 토대위에 혼혈인들을 보호할 수 있는 법제도적 장치 마련과 사회문화적인 안전망 구축과 인식전환의 노력들이 모색되고 실시되어야 한다.

학교급별 국제결혼 이민자 자녀 학생수(2005.10 교육부 조사)

구분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계
초	555	203	133	243	117	82	10	1,259	288	253	312	475	550	411	394	47	5,332
중	108	36	15	25	8	14	0	176	14	19	24	29	28	30	56	1	583
고	25	11	9	19	2	17	0	45	2	7	9	13	9	27	7	4	206
합계	663	239	148	268	125	96	10	1,435	302	272	336	504	578	441	450	48	5,915

2) 공약과제

- 전담기구 설치
- 교육현장에서의 인권·다문화에 대한 교육 실시
- 이주노동자의 자녀에 대한 지원 정책 마련

7. 한국자활후견기관협회 경기도지부

자활후견기관을 중심으로

□ 아젠다 1 : 자활연수원설립

(자활교육센터 및 저소득층 교육센터 설치 및 운영)

○ 필요성

- 2000년 10월부터 국민기초생활보장법과 함께 시작된 자활사업이 지난 5년동안 2배 이상의 질적, 양적으로 성장 함. 이에 따라 기초자치단체 위주로 설계되어 있는 보장기관의 지원체계에 대한 한계가 나타남.
- 자활사업의 성과를 높이고, 변화된 수요와 욕구에 맞는 전문적인 지원체계가 필요함.
 - 광역단위 자활공동체의 설립 필요. (규모의 경제, 전문성 제고, 사회적기업으로 발전 가능성 등)
- 자활지원 실무자 및 참여자의 교육 수요 증대
- 광역단위 일자리 지원체계 구축 필요 (유료간병, 산후도우미, 가사보조원등 취약계층의 일자리 알선 지원체계)

○ 현황 및 문제점

- 자활사업 추진현황
 - 자활근로(시장형, 사회적일자리형, 근로유지형 등), 자활공동체, 지역봉사, 사회적응프로그램 등의 자활사업을 실시하고 있으며, 조건부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16,029명이 자활사업에 참여하고 있음 (05. 12. 31 현재)
 - 경기도는 32개소의 자활후견기관이 있으며 200여명의 실무인력과 2,500여명의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이 참여하고 있음.
- 광역단위 지원체계 부족
 - 자활지원사업의 특성상 지방자치단체의 역할이 활성화의 중요한 변수로 작용하고, 자활의 경로와 모델이 다양해질수록 광역자치단체에게 보다 많은 역할이 요구되고 있음. (광역단위의 영업 및 판매, 기타 지원체계 구축 등)
- 자활교육 추진체계 부족
 - 자활후견기관에서는 약 2,500명의 자활사업 참여자들을 대상으로 심성교육 및 기능교육 등을 연평균 10회 이상 실시하고 있음. (자활의욕 고취, 공동체훈련, 간병이론, 간병실무, 산후조리, 베이비시

터, 장애우도우미, 집수리 등)

· 자활사업은 참여자들의 자활의욕, 자활프로그램, 사업수행 인프라, 근로유인책 등이 성공의 중요한 변수로 작용하고 있음. 이 중에서 참여자들의 자활의욕과 사업단의 경쟁력을 향상시키기 위한 '교육'은 자활사업 수행과정에서 매우 중요한 비중을 차지함.

- 각 기관별 실무자의 역량 편차에 의한 통일되어있지 않은 자활사업 참여자의 교육을 매뉴얼화하여 상시적인 교육프로그램 진행의 필요성이 대두

- 경기도지부 자활후견기관별 교육현황 비교

(2005년 기관별 교육결과보고서 참조)

기관		A 기관	B 기관	C 기관
교육추진 횟수(날짜 기준)		78	17	56
기관 내부 교육	참여자	20	12	35
	실무자	14		13
외부 위탁 교육	참여자	8		1
	실무자	36	5	7

- 참여자의 교육욕구 현황(교육프로그램의 지속적인 필요성에 대한 응답분포)

(2005년 2월 경기도지역 자활사업 참여자 조사연구 보고서 참조)

항목	빈도
매우 그렇지 않다(필요없음)	49(4.2)
그렇지 않다	59(5.1)
보통이다	208(17.9)
그렇다	546(46.9)
매우 그렇다(필요함)	302(25.9)
계	1164(100.0)

- 자활후견기관의 실무자의 높은 이직률로 실무자의 전문성 확보가 어려우므로 이를 해소할 교육이 필요하며, 잦은 이직률을 낮추기 위한 비전 중심의 교육의 필요성 대두

- 자활후견기관의 기능 강화

- 자활사업 중심으로 진행되는 자활후견기관을 교육, 취업알선, 사례관리 등의 기능을 강화하여 참여자의 자활·자립 지원

- 자활의 전문성 강화

- 사회적 기업의 실무자 양성을 위한 자활후견기관 실무자 및 자활사업 참여자 교육프로그램 강화

- 실무자의 잦은 이직으로 인한 자활실무 전문인력이 부족하므로 자활실무 전문인력 양성

- 자활사업 참여자 중심의 교육 강화
 - 자활사업 참여자의 교육의 진행방법의 혁신을 통한 자활·자립 지원
 - 단절적이고 일회적이었던 교육프로그램의 매뉴얼화를 통한 다양하고 지속적인 교육진행
- 저소득층의 자활·자립을 위한 교육기능 보강
 - 자활사업 참여자가 아닌 지역의 저소득층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 개발 및 보급
 - 일자리 지원을 위한 기능 보강
- 참여자의 실무기능 인증기관으로서 자리매김
 - 개별 사업단의 기능 습득 후 이를 인증할 수 있는 시스템의 부재를 해소하고 기능 강화를 통한 자활·자립 지원
- 실무자 및 참여자를 위한 평생교육원 기능 수행
 - 대학과 연계하여 학점 은행제 도입으로 학력인증제 도입
- 자활사업 전문 연구기관으로 자리매김
 - 각종 연구사업 수행 및 조사사업을 토대로 한 정책제언
- 경기도에는 자활사업참여자들을 위한 별도의 교육인프라(수원소재50여평교육장)이외는 없기 때문에 기관마다 동일한 내용의 교육을 중복실시하거나, 교육수요가 있음에도 적절한 시기에 교육을 실시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임. (자료참조 : 자활후견기관협회 월보전산화 시스템 등)
- 자활사업에서 '교육'의 중요성과 교육수요를 감안할 때 경기도차원에서 자활사업을 위한 별도의 교육인프라가 절실히 요구되고 있음.
- 개별 자활후견기관은 상담, 작업관리, 행정, 영업, 판매, 교육, 홍보, 연대 사업, 신규사업 개발 등 업무의 과중을 겪고 있으며, 유사한 내용의 교육을 각 후견기관마다 실시하는 것은 교육의 질을 낮출 우려가 있을 뿐만 아니라, 예산의 낭비가 있음.
- 자활사업에 참여하지 않는 지역의 저소득층의 일자리 확보 및 자활의지 고양을 위한 교육 필요하며 자활중심을 탈피한 교육프로그램의 개발과 진행의 요구 등장
 - * 구직자를 위한 맞춤형 교육 요구
 - * 일반 저소득층의 자활 경로 개발을 위한 교육 요구 등

○ 개선방안

- 광역단위 사회적기업(자활기업) 설립, 전문직업인 양성을 통한 신규 일자리 창출, 신규사업개발 보급을 통한 지역센터 기능강화, 자활사업 홍보 및 적극적 상품마케팅, 민간 자원의 확보를 통한 사업의 확대, 지역내 특성화된 자활사업의 개발 및 연구의 기능을 수행 등
- 광역교육센터(부설)를 통해 자활사업참여자들에게 대한 전문적인 자활기능교육, 심리정서적 훈련, 실무자 대상 전문교육 등

□ 아젠다 2 : 자활후견기관 종사자들의 처우개선

○ 필요성

- 사회복지시설 종사자들은 고학력의 전문가임에도 낮은급여와 힘든여건 때문에 잦은 이직이 발생함에도 불구하고 사회복지사에 대한 사회적편견 때문에 직업인으로서의 대우보다는 봉사자로 오해받고 있기 때문에 처우개선 요구에 소극적임
- 사회양극화 및 근로빈곤층의 문제가 심각하게 대두되고 있는 현 상황에서, 사회적 취약계층에게 일자리와 자활자립의 계기를 지원하는 자활지원분야 종사자들의 중요성은 두말할 필요가 없음.
- 사회복지사업에 종사하고 있는 이들 또한 ‘직업인’이라는 사회적 인식의 개선과 함께, 실질적인 처우개선 및 복리를 증진시켜 이들이 전문성을 발휘 할 수 있도록 지원할 필요가 있음.

○ 현황 및 문제점

- 사회복지 종사자들의 평균 급여는 경기도 평균임금274만원에 비해 140만원(62%) 밖에 되지 않는 낮은 임금을 받고 있음. (2005 경기통계연보)
- 더군다나 자활후견기관 종사자들의 경우, 동일업종인 종합사회복지관과 종사자들에 비해 약 85% 정도로 낮은 임금을 받고 있음.

2005년		2006년	
종합사회복지관	자활후견기관	종합사회복지관	자활후견기관
100%	88%	100%	85%

<종합사회복지관 대비 자활후견기관 종사자 임금차이. 4급7호봉 기준>

- 이로 인하여 자활후견기관 종사자들의 평균 근무연한이 1.3년(15개월) 밖에 되지 않는 등, 잦은 이직으로 인한 많은 문제가 발생하고 있음.(자활협회 직무실태조사 자료)

- 전국자활후견기관 이직율 현황

(2004년 자활정보센터 이직율 조사 보고서 참조)

	최소	최대	평균값
2000년 이직률	.00	83.33	18.8946
2001년 이직률	.00	125.00	24.6154
2002년 이직률	.00	133.33	37.1554

- 종사자들의 잦은 이직으로 인해 사례관리의 단절, 전문지식 및 경험의 축적 어려움 등의 문제가 발생하고, 특히 자활의욕고취를 위한 자활대상자와의 밀접한 관계형성이 어려움.

○ 개선방안

- 별도의 특별수당을 신설하여 자활사업종사자들의 처우 개선.
 - 직책수당 및 사례관리수당 신설.
- 도시지역의 물가차이를 감안하여 식비보조비를 추가 지원
- 사회복지시설과 준하는 임금수준으로 인상

□ 아젠다 3 : 자활프로그램(사례관리지원센터 및 일자리지원센터 제도화)

○ 필요성

- 저소득층 자활·자립 메신저 역할 수행필요
- 취업·창업과 관련된 지역사회 인프라 구축(창업-소상공인센터 등 유관단체와의 네트워크구축)
- 저소득층을 찾아가는 밀착 상담 서비스 및 맞춤형취업교육 필요
- 일자리지원센터 기초상담부터 사후관리과정을 통한 실질적 자활사례 모델 발굴
- 저소득층 일자리지원센터에 대한 기초자치단체(시·군)의 관심 제고
- 기관 참여자들에 대한 집중 상담을 통해 개인의 적성, 학력, 경력 등에 적합한 '개인별 자활계획'을 수립

○ 현황 및 문제점

- 현재 일자리지원센터 10개소와 사례관리지원센터10개소운영하고 있으나 전체 기관중30%에도 못미치는 현황임
- 지역의 저소득층의 다양한 일자리 발굴 및 자활사업의 참여자들의 지속적인 사례관리를 통하여 참여

대상 뿐만아니라 지역저소득층의 자활사업에 대한 관리필요

○ 개선방안

- 자활후견기관 참여자, 지역사회 수급권자들의 사회참여와 경제적 자활, 자립을 유도할수있도록 경기전역에 개소필요
- 경기지역 특색에 맞는 도심형, 공단내형, 도농형, 신공단 조성형, 저소득밀집형 등 모델구축하여 경기지역 저소득층의 실질적인 자활을 실현하기 위한 재원확보
- 일자리지원센터 제도화 정책제언을 통한 자활후견기관 업무영역의 전문화 확대에 대한 제도 마련

□ 아젠다 4 : 기초생활보장기금 활성화 (창업자금지원 절차개선, 운용분야 다양화)

○ 필요성

- 자활사업 대상자들이 창업을 위한 자금지원을 신청할 경우, 채권설정, 지원시기, 지원절차 등이 까다로워 실질적으로 적시에 지원되고 있지 못함.
- 자활사업 대상자들은 스스로 자금을 조달할 능력이 없을뿐만 아니라, 정부의 창업지원제도를 활용하려고 하더라도 담보 및 보증인을 구할 수 없어서 창업에 애로를 겪고 있음.
- 현재 자활사업을 위한 보조금은 자활근로사업 및 자활후견기관 운영비에 한정되어 있어 사례관리, 사업개발 및 정책연구, 지원체계 네트워크 구축 등에 예산지원 필요.

○ 현황 및 문제점

- 경기도 기초생활보장기금의 경우 수요가 있음에도 자금지원신청 규모가 작은 것은 공모방식, 지원 내용 및 절차 등이 까다롭기 때문에 신청자체를 포기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 자활기금에서 지원되는 창업자금은 원금보존을 전제로 융자되기 때문에 그 과정에서 사업의 타당성보다 채권확보가 더 중시되고 있는 실정임. (계약당사자가 자활후견기관 및 보장기관이기 때문에 상가임대차보호법의 적용을 받을 수 없어 별도의 전세권설정 등 채권확보를 요구하고 있음. 그러나 건물주가 이를 기피하기 때문에 상권이 좋은 지역이나 임차료가 싼 물건을 확보하기 어려움)
- 창업자금의 접수는 연중 수시로 하고 있으나, 심사 및 지원은 연 1회로 운영되기 때문에 적시에 자금이 지원되고 있지 못하거나 포기하는 사례가 많음.

○ 개선방안

- 기금활용 공모제 도입 (기초생활보장기금을 자활사업분야에 활용할 수 있는 기획사업, 제안사업등을 공모. 연 2회)
- 자활공동체 창업자금 등은 전담창구(담당자)를 개설하여 수시접수 및 지원이 이루어지도록 함.
- 자활공동체 창업자금 지원 절차 개선
- 전세계약자를 자활공동체 명의로 할 수 있도록 하여, 상가임대차보호법을 활용한 채권확보.
- 창업자금 지원 시 운영자금 비중 높임. (현재는 임차보증금 등에 높은 비중을 두고 있으며, 시설비 및 운영비는 매우 낮음)
- 자활공동체 창업자금 지원시, 용자뿐만 아니라 상환 받지 않는 지원금도 병행 필요
·시설비 및 운영비 용자액의 상환완료시, 장려금의 성격으로 상환액의 80%를 환급해 줌.
·또는 시설비 및 운영비 중 일부는 상환하지 않아도 되는 지원금으로 교부.

□ 아젠다5 : 경기도 자활지원조례 제정

○ 필요성

- 중앙정부와 기초자치단체에 과중하게 역할이 편중되어 있는 자활사업을 보다 효과적으로 지원·육성하기 위해 경기도 역할과 책임을 증대시키며
- 기초자치단체에서 수행하기 어려운 규모의 자활사업을 지원하게 하여 자활사업의 효과를 제고시키고
- 더 나아가 자활과 근로연계복지의 발전을 통해, 실업과 빈곤으로 고통 받는 저소득층 및 노동소외계층의 빈곤해결과 복지를 증진하기 위함.

○ 현황 및 문제점

-현재 기초생활보장제도의 자활을 지원하기 위한 정책수립 및 시행단위는 '보장기관'으로 서 [중앙정부, 시·도, 시·군·구]로 구분되어 있으나, 실제적인 정책수립 및 시행단위는 중앙정부와 기초자치단체로 집중될 뿐, 광역자치단체(시·도)의 역할은 배제되거나 지극히 단순한 전달체계의 역할에 그치고 있음.

- 자활지원사업의 특성상 지방자치단체의 역할이 활성화의 중요한 변수로 작용하고, 자활의 경로와 모델이 다양해질수록 광역자치단체에게 보다 많은 역할이 요구되고 있음에도 관련 근거 등이 없기 때문에 사업추진에 애로가 있음.
- 다양해진 자활지원사업의 경로를 수용하고, 경기도의 역할을 확대하며, 자활사업수행기관 및 자활사업단에게 현실적인 지원을 할 수 있도록 관련근거를 확보하기 위해서는 '경기도자활지원조례'가 필요 함.

○ 개선방안 (조례에 포함될 주요 내용)

- 자활기본계획의 수립 및 평가
- 광역자활협의체의 운영에 관한 사항
- 기초생활보장기금의 조성 및 운영
- 자치구 지역자활사업 활성화를 위한 사항
- 자활사업실시기관의 지원
- 자활사업단의 재화 및 용역에 대한 우선구매 또는 우선위탁에 관한 사항

5.31 지방선거 경기도사회복지 실무위원 명단

기 관 명	직 위	성 명	전화번호
경기도노인복지시설연합회	실 장	정용수	255-1546
경기도사회복지공동모금회	사무총장	박상용	225-6088
경기도사회복지관협회	사무국장	김선구	714-6433
경기도사회복지사협회	사무국장	전상원	245-7553
경기도사회복지협의회	사무처장	김종태	213-8551
경기도사회복지행정동우회	총 무	박재현	017-369-1311
경기도아동복지시설연합회	실 장	한경희	252-3060
안양시관악장애인복지관	관 장	최 영	403-0078
경기도장애인복지시설협회	사무국장	조석환	256-6073
경기도장애인재활협회	사무국장	이영재	235-2114
경기도청소년상담센터	팀 장	정미선	237-1318
경기복지시민연대	사무국장	허윤범	215-4399
한국자활후견기관협회 경기지부	사무국장	유유미	232-0175
경기도사회복지협의회	부 장	박일규	213-8551
경기도실직자노숙인시설연합회	총 무	신명진	017-211-7551
경기정신재활센터	소 장	장명찬	242-0877